은퇴설계 시
고려해야 할 세금

적격, 비적격 연금의 세제혜택

세제 비적격 연금 → 세제 혜택 없음

세제 적격연금 → 세제 혜택 있음

비적격연금의 특징

[비적격연금: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금으로 세제 혜택이 없음]

- ✔ 연금 납입 시 종합소득세액 공제와 같은 세금 혜택 없음

1년에 400만원까지
12% 또는 15%세금 공제

세액 공제 X

- ✔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비과세
- ✔ 공적연금 수령액, 은퇴 후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

비적격 연금을 선호하는 유형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은퇴 후
종합소득

- 소득세 부담액이 커질 수 있음
- 공적연금 수령액 감액 또는
  제한 가능성

공적연금 수령액, 은퇴 후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

비적격연금 선호

비적격연금의 세제 일반

비적격연금 —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 과세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차익 → 비과세

비과세 요건

- 연금납입 기간: 10년 이상
- 거치형의 경우에는 거치기간(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비적격연금의 세제 일반

비적격연금 —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일시납)

1. 일시납으로 납입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을 경우(확정형)
2. 일시납 즉시연금을 상속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억 원 초과액에 대해 과세

비과세 되는 경우(일시납)

종신형 즉시연금 →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

비적격연금의 세제 일반

비적격연금 —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 월납 방식: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 특정시점 이후에 연금 수령

한도의 제한 X

매월납 방식의 조건

1. 계약기간 10년 이상 유지
2. 적립기간 5년 이상
3.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거나 1배 이내에서 증액되어야 함
4.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

조건 충족 시 비과세

비적격연금의 세제 일반

매월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50만원으로
증액 변경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월납입 보험료

100만 원 → 2.5배 증액 → 250만 원

"증액을 한 시점부터
10년 후 비과세 혜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1배 이내 증액,
계약기간은 10년 이상 유지!

비적격연금의 세제 일반

비적격연금 —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계약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하는 경우

1. **계약자명의를 변경한 경우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2013. 2. 15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2. **보장성 보험 →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2013. 2. 15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3.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 변경한 경우**
   (2013. 2. 15 이후 변경분부터 적용)

비적격연금의 세제 일반

매월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2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월납입 보험료

100만 원 → 1배 증액 → 200만 원

“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후 비과세 혜택 ”

고령자의 연금가입과 비과세 기준

납입 기간, 거치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자

"즉시형 연금 선호"

즉시형 연금의 비과세

- ✔ 목돈을 예치 후 연금으로 수령 시 비과세
- ✔ 종신형일 경우 비과세
- ✔ 상속형은 납부원금 2억 원까지 비과세 (부부합산 4억 원까지)
- ✔ 최초 확정형 설계 → 일정 기간 후 상속형으로 변경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 비과세

고령자의 연금가입과 세제 일반

현재 52세인 사람이 연금보험에 거치식으로 가입한 후 60세부터 확정형 연금(20년)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입 상품	거치식 연금보험
가입 조건	60세부터 확정형 연금(20년)으로 수령

문제점

원리금 수령

원금 + 이자

- ✔ 확정형 연금은 비과세 X
- ✔ 거치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황(8년)

비과세 불가

고령자의 연금가입과 세제 일반

현재 54세인 사람이 연금보험에 거치식으로 가입한 후 65세부터 확정연금형(15년)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입 상품	거치식 연금보험
가입 조건	65세부터 확정형 연금(15년)으로 수령

- ✔ 일시납
- ✔ 보험 가입 후 11년 뒤 연금 수령

비과세 가능

고령자의 연금가입과 세제 일반

현재 55세인 사람이 연금보험에 거치식으로 가입한 후 60세부터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입 상품	거치식 연금보험
가입 조건	60세부터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종신형 연금은 거치 기간과 무관하게 연금 수령 가능"

일정 기간 거치로 원금 확보 후 수령

비과세 가능

확정형으로 설계했으나 10년이 지나기 전에 종신형으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입 상품	확정형 연금 → 종신형 연금으로 변경(가입 10년 이내)

- 종신형으로 변경 이후부터의 보험차익 → 비과세 가능
- 변경 이전의 확정형 연금 → 비과세 불가

연금설계 시 고려사항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

상속·증여된 연금에 대한 과세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증여재산으로 간주, 증여세 과세

↓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

상속·증여된 연금과 세금

[연금지급 개시 전 사망한 경우]

해약 환급금은 상속인에게 지급

지급된 금액은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증여된 연금과 세금

[확정형, 종신형 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연금 수령권 상속

상속세 납입

확정형
잔여 수령 기간 동안 연금액의 현재가치 계산
(할인율: 3.5%)

종신형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통계청 고시)
까지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 계산(할인율: 3.5%)

은퇴설계 시 고려해야 할 세금

바람직한 연금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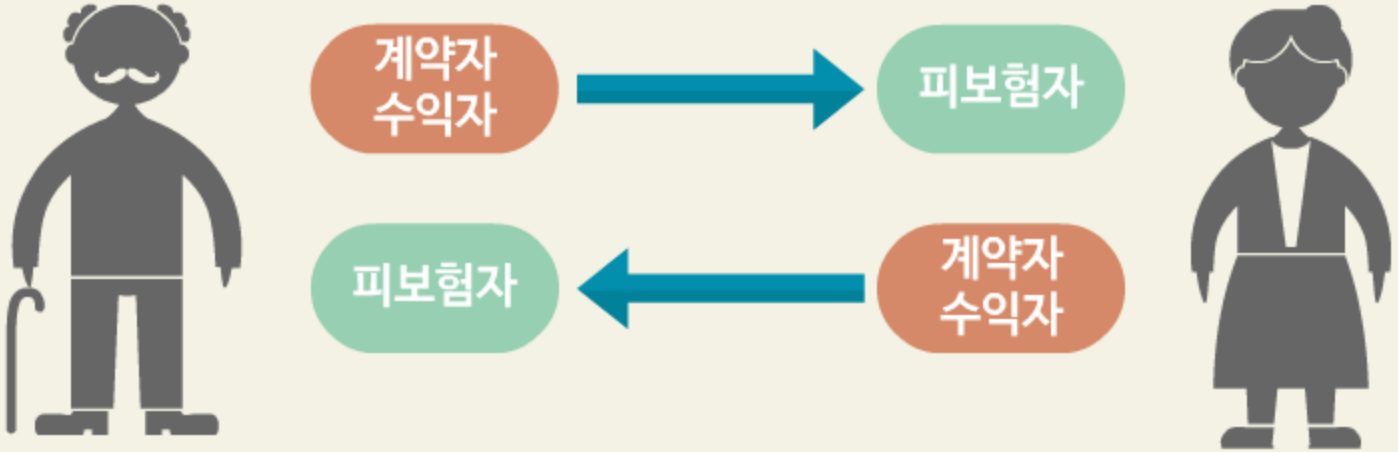

부부가 각각 계약자와 수익자로 두 건의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재산 분산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발생!

은퇴설계 시 고려해야 할 세금

바람직한 연금 설계

장점

- ✔ 확정기간 동안 연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
- ✔ 확정기간, 최저지급 보증기간 전에 남편 사망: 연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X

연금소득세와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소득의 종류

국민연금 (2002.1.1 이후 납입분)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2002.1.1 이후 납입분)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연금 납입 과정에서 세금 혜택"

연금소득세 과세방식

연금액수에 따른 공제액

연금소득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1200만 원의 연금소득에는 얼마의 세금이 과세될까?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액의 10%

1200만 원 – 590만 원 = 610만 원에 대한 세금 과세

총 연금액이 4,10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900만 원 이상은 공제되지 않음

연금 종류별 세금혜택

연금 종류	세금혜택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저축	근로자 연봉 5500만 원, 사업자 종합소득 4000만 원을 기준
퇴직연금	• 기준 이상일 경우: 12% 세액 공제 • 기준 이하일 경우: 15% 세액 공제 * 개인연금(연금저축)은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두 상품을 합해 총 700만원 공제가능

세액공제

연금 종류별 연금소득 과세

연금 종류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국민연금	연금소득 납부 (간이세액표)	퇴직소득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저축	• 연 12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 • 연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 대상 → 원천징수율 3~5% (70세이상: 4%, 80세 이상: 3%, 종신형: 4%, 퇴직연금: 3%)	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발생원천별과세)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의 세금혜택

근로자, 개인 사업자 모두 400만원까지 12~15%의
세금공제 (단 본인을 계약자, 수익자로 한 본인 명의의 연금)

근로자

400만원 까지
12~15%
세금공제

개인 사업자

보장성 보험과 연금 보험(저축)의 과세기준 비교

구 분	근로자	개인 사업자	본 인	기본공제 대상자	대상
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상해보험)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연간12%세율로 연간100만 원까지 공제)	해당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단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없음	본인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

연금소득세 과세방식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요약

구 분	사고시 보험차익	만기시 보험차익	
저축성 보험	비과세	10년 미만(단기성)	과세(이자소득세)
		10년 이상(장기성)	비과세
보장성 보험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의 중도 해지에 따른 과세

NEWS TIMES

연금저축 해지 전 참고하세요!

금융소비자는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고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금부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 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관련 세재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금저축(보험)의 중도 해지에 따른 과세

연간 연금납부액이 500만 원인 사람이 가입 후 4년 만에
중도해지 했고 해지환급금은 2,100만 원이다. 이때 과세액은?

구분		내용
납입원금 2,000만원	1,600만원	연 400만원씩 4년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400만원	연간납입액이 500만원이므로 400만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연간 100만원씩 4년간 금액
운용수익 100만원		납입원금에 대한 운용수익

기타소득	2,100만 원

세액공제 금액(1,600만 원) + 운용수익(100만 원)
= 1,700만 원에 대해 15% 과세

연금저축(보험)의 중도 해지에 따른 과세

연간 연금납부액이 500만 원인 사람이 가입 후 4년 만에
중도해지 했고 해지환급금은 2,100만 원이다. 이때 과세액은?

구분		내용
납입원금 2,000만원	1,600만원	연 400만원씩 4년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400만원	연간납입액이 500만원이므로 400만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연간 100만원씩 4년간 금액
운용수익 100만원		납입원금에 대한 운용수익

1,700 만원 x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 280.5 만원(분리과세)

→ 약 1800만원 실수령

연금저축(보험)의 중도 해지에 따른 과세

연간 연금납부액이 500만 원인 사람이 가입 후 4년 만에
중도해지 했고 해지환급금은 2,100만 원이다. 이때 과세액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
세액공제 절세액	1,600 만원 x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211 만 원	1,600 만 원 x 15% (지방소득세 포함16.5%) = 264 만 원
기 타 소 득 세	1,700 만원 x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 280.5 만원(분리과세)	
차 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69.5만원 (불리)	△16.5 만원 (불리)

연금저축의 해지와 과세

소득이 없는 자가 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 < 납입 누계액

→ 운용수익이 없으므로 세금 과세 X

해약 환급금 > 납입 누계액

→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 과세 O

큰 손해 X

과세표준	해약 환급금 – (납입 누계액 – 세액공제분 납입액) = 운용수익 + 세액공제분 납입액

2,100만 원 – (2,000만 원 – 1,600만 원)
=100만 원(운용수익) + 1600만 원(세액공제)
= 1,700만원

-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 100만원에 대해 과세
- 운용수익이 없는 경우: 세금 과세x